

第58回 (定期會)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市民福祉委員會會議錄

第7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1996年12月23日(月) 午後3時

場 所：第2小會議室

議事日程

1. '96年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2. 서울特別市城北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改正案審議의件

審査된案件

1. '96年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市民局所管)(市民福祉委員會 提案) 1面
2. 서울特別市城北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改正案審議의件(城北區廳長 提出) 2面

(15時24分 開議)

1. '96年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市民局所管)(市民福祉委員會 提案)

○委員長 權赫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7차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민복지위원회 소관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하신 김남효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효 간사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南孝 시민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위원회 간사 김남효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96년11월26일에서 '96년12월2일까지 실시한 시민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성북구 행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구 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성실하게 수행된 행정에 대하여는 이를 치하하여 구민의 이익과 성북구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보면 시민복지위원회 위원 전원 13명을 1개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96년

11월26일부터 11월28일까지 시민국 소관 '96년11월29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96년11월30일은 감사반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제1반이 정릉1동사무소, 제2반이 둔암동사무소를 감사를 실시하고 '96년12월2일 구청 5층 회의실에서 위원회별로 강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시 여러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소관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국 소관으로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보수공사비의 불합리한 지급건외에 31건을 시정, 또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보건소관으로 에이즈 감염 예방, 홍보 계획 수립요망의 7건을 시정 또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동사무소 소관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인 보안등을 1개월도 안되어 교체하는 사례의 6건을 공통지적 시정 또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의결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赫驥 김남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시민복지위원회 소관 '9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성진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洪性湊委員 시민국 산업과와 관련하여 물가 관리에 소홀하면 그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유념할 것과 관내 물가관리에 전력을 다해 주기를 요망하면서 예산 확보 및 인력지원등 다각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지적사항을 요청드립니다.

○委員長 權赫驥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홍성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서 빠졌다는 것입니까?

○洪性湊委員 네.

○委員長 權赫驥 이것을 추가시켜 달라는 것입니까?

○洪性湊委員 추가사항을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여러 위원님들 자료에 지금 홍성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빠졌는데 그것을 첨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안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홍성진위원장님 토론하신 문제를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을 구청에 보내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6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것과 홍성진위원이 한가지 추가 수정한 그것만 집어넣고 본회의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나만 더 해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權赫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심의의견을 상정합니다. 심의하기전에 공무원들

입석을 시켜야 하니까 잠깐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29分 停會)

(16時03分 續開)

○委員長 權赫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다루기 전에 우리 위원님한테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복지위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최석근 전문위원이 행정위원회의로 가시게 되고 김진영 전문위원께서 우리 시민복지를 인사발령에 의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그간 고생한 노고에 대해서 다같이 박수로서 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소리)

○專門委員 崔石根 의정활동 보좌를 제대로 못해 드리고 제가 또 행정위원회를 맡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회에 가더라도 열심히 위원님들 보좌하는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김진영 전문위원님께서 시민복지위원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박수소리)

○委員長 權赫驥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專門委員 金鎮永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2. 서울特別市城北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改正案審議의件(城北區廳長 提出)

○委員長 權赫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심사의견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尹守鉉 존경하는 권혁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윤수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委員長 權赫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永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委員長 權赫驥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중 2페이지를 보면 오타가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라고 그랬는데 149조로 위원님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구조문대조표 성북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대조표에 보면 22페이지 맨 밑에 응접세트 장, 의자 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기타 의자가 나와서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접세트는 공란으로 없애야 되겠죠? 없애는 것이 타당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市民局長 尹守鉉 예, 맞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22페이지 맨 밑에 응접세트 의자 장의자 거기를 공란으로 전부 삭제해주시고 기타의 의자에 그것이 삽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군데가 구청측 자료에 오타가 났으니까 위원님들은 정정을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景錫委員 제안설명자료 2페이지 보면 변경 내용에서 현행에서 변경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봅시다.

제작비 판매이윤 수집운반 수수료로 해서 3등분해서 봉투가격을 결정하였으나 변경된 내용을 보면 제작비, 판매이윤, 수집운반비에 처리비라고 해서 반입 수수료를 추가 4등분했습니다. 이랬을 때 지난번에 봉투가격을 인상한지 얼마 안되는데 간접적으로 인상요인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清掃課長 李裕擇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니다.

봉투가격의 인상은 없습니다. 단지 대행업체가 그동안에는 쓰레기반입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구청 쓰레기가 김포매립지에 가면 반입량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 통보되는데 저희들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에서 반입료를 냈었는데, 대행업체 것도 저희들이 다같이 부담해 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김포매립지가 들어갈 때는 그 양만큼은 대행업체에서 우리가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징수해서 그 금액을 우리가 매립지에 반입료를 낼 때 같이 내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봉투가격은 오르지 않습니다. 대행업체는 봉투를 팔아가지고 자체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사람들이 제작비를 내고, 수집운반비를 그 사람들이 전체 수입으로 해서 처리했는데 거기는 처리비는 포함되지 않고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자기를 수입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입 운반비중에 일부를 반입료로 내야됩니다.

그 산출기준은 김포매립지의 반입하는 쓰레기량을 기준해서 리터당 가격으로 환산해서 부담하도록 봉투가격에다 반영시켰습니다.

○朴景錫委員 어쨌든 반입수수료를 우리가 내지않던 것 아니겠습니까?

○清掃課長 李裕擇 반입수수료 우리가 다 냈습니다. 구청에서 다 부담하던 것을 이제는 저희들이 반입료는 대행업체에서 간 쓰레기든 우리 구청에서 간 생활쓰레기물이든 반입료는 우리가 모두다 부담했던 것이 지금 현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행업체에서 간 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 양만큼 통보되면 저희들이 우리 구청,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양하고 플러스시켜서 같이 내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에게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朴景錫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행업체 김포매립장의 반입료를 성북구청에서 부담을 했는데, 앞으로는 대행업체에 부담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清掃課長 李裕擇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權赫驥 확실합니까?

○清掃課長 李裕擇 예.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수증대도 하고요. 우리 구청차원에서 여러가지.

○委員長 權赫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洪性湊委員 그러면 대행업체의 수익이 줄어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清掃課長 李裕擇 예. 수익이 줄어듭니다. 연간 1억9,000정도를 앞으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安敦洙委員 그러면 주민들한테 더

○清掃課長 李裕擇 아닙니다. 봉투가격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 준 그대로 받습니다.

○洪性湊委員 그러면 현행하고 달리 변경된 내용에는 처리비하고 반입수수료하고 따로 세분화되지 않습니까?

○清掃課長 李裕擇 처리비와 반입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洪性湊委員 처리비와 반입수수료가 세분화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반입수수료가 인상이 된다면 김포매립장에서, 그러면 바로 인상요인으로 작용해서 봉투가격에 반영을 시키실 건가요?

○清掃課長 李裕擇 그래서 처리비는 김포매립지의 반입수수료가 오르면 대행업체의 부담이 더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봉투가격은 의회에서 조례안으로 우리가 상정해서 의결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洪性湊委員 그러니까 지금 바로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부담이 없지만 봉투가격 산정요인에서 플러스 반입 수수료가 되기 때문에 반입수수료가 인상이 된다면 바로 봉투가격 산정요인에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결국 오지 않습니까?

○市民局長 尹守鉉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洪性湊委員 인상요인의 근거를 마련하신 거죠?

○市民局長 尹守鉉 그렇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洪性湊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용어의 정의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다량 폐기물업자들 종량제 부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격봉투 가격 결정 방법이 상위법

령이라든가 시의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바뀌게 된 것입니까?

○市民局長 尹守鉉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清掃課長 李裕擇 상위법에 개정하고요.

○洪性湊委員 규격봉투 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법령발체가 몇조에 있죠? 뒷 부분에 보면 법령발체라고 있어서 읽어봤는데 거기는 안들어 있던데요.

○清掃課長 李裕擇 기존의 배출자부담 그리고 원인자 부담해가지고 지금 일반폐기물이 제정되어가지고 시행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부담을 안시켰습니다. 못시켰고, 각 구가 그렇다가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은 당연히 배출자 부담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도 반입료를 구청에서 부담하는데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해서

○洪性湊委員 구청에서 나온 신·구조문 대조표 뒤에 관계 법령발체문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봉투가격과 관련된 관계법령이 어디있느냐구요?

○清掃課長 李裕擇 개정된 17조를 보면 수집·운반 및 처리비 등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洪性湊委員 오늘 조례제출하신 것이 상위법령하고 시조례에 근거해서 제출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관계법령 발체문에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구요?

○清掃課長 李裕擇 제16조2항 및 3항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구청에서 시준칙안에 준해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洪性湊委員 규격봉투 가격결정 방법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변경이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느냐구요?

상위법령 때문에 됐으면 상위법령 이 관계법령 발체문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보고싶어서 질문드렸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관계법령 발체문에 없어요.

다른 구에서도 조례안 이렇게 개정하고 있습니까?

○清掃課長 李裕擇 예. 개정하고 있습니다.

○洪性湊委員 25개 구 중에서 몇개구가 조례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죠?

○清掃課長 李裕擇 지금 기존의 개정된 데가 성동구와 강동구 몇개구가 기히 개정이 되었고, 앞으로 지금 다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13조에 보면 2항과 3항 규정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집·운반 처리를 같이 포함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해서 현재 김포매립지에 반입되는 반입량에 대해서 대행업체 것도 사실상 구청에서 내주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洪性湊委員 규격봉투가격 결정 방법이 변경된 계기가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겁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적인 방침이라든가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올라오게 된 겁니까?

○清掃課長 李裕擇 서울시준칙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洪性湊委員 법령하고 개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清掃課長 李裕擇 법령·개정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洪性湊委員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제안 설명하실 때는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오늘과 같은 조례가 올라왔다고 제가 듣기로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법령이 개정되어서 이 봉투가격 방법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어떤 방침에 의해가지고 규격봉투가격 결정방법을 바꿔버렸는지 그 근거가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지금 당장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없다 하더라도 인상요인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반입수수료의 변동에 따라서 언제든지 인상을 시킬 수 있다는 근거자료가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세분화됐으니까,

○清掃課長 李裕擇 앞으로 쓰레기처리문제는 원안자부담이니까 배출자부담이니까 점차적으로 주민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올릴때는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의

회에서 의결을 해줘야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재정적자도 있기 때문에

○洪性湊委員 일단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개정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 먼저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요인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清掃課長 李裕擇 저희들은 이 조례를 반드시 삽입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북구가 어느 구보다도 청소분야에서 부담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못드렸는데요. 이 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개정됐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이번 개정될 때 이 내용이 들어와 있었습니까. 종전에는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되어 있던 내용이 폐기물처리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반입수수료를 해가지고 팔호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해 가지고 처리업자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洪性湊委員 이것 신·구조문대조표 가지고 제시죠? 그 뒤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문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올라온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이 됐다면 이 관계법령 발췌문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개정되는 조례가 아닌지.

○清掃課長 李裕擇 관계법령 발췌문은 개정된 내용을 발췌한 것이 아니고요. 이 법 전체가 전면 개정됐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하고 관리법 시행령 이번주에 조례안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다 발췌한 겁니다.

신·구조조로 올라온 것이 아님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洪性湊委員 25개 구 중에서 이런 규격봉투가격 결정방법 변경과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된 구가 몇개 구청인지는 확실히 모르십니까?

○清掃課長 李裕擇 정확한 것은 몰라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광진, 종로, 영등포, 중구 서초, 용산, 지금 현재 대다수, 관악, 금천, 도봉, 서대문, 강서, 중랑, 지금 제가

부른 구가 지금 현재 기회 이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洪性湊委員 알겠습니다.

○朴景錫委員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 말하자면 독자적 발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清掃課長 李裕擇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權赫騏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33分 停會)

(17時05分 續開)

○委員長 權赫騏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안건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전문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06分 散會)

○出席委員 11人

權赫騏	金南孝	金光植
金珉奭	朴景錫	安敦洙
吳榮作	李大一	李龍變
任泰根	洪性湊	

○缺席委員 2人

金榮植	崔哲模
-----	-----

○參席專門委員

專門委員	崔石根
專門委員	金鎮永

○參席公務員

市民局長	尹守鉉
清掃課長	李裕擇